

수원지방법원 2020. 5. 6 선고 2019나8976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0. 5. 6 선고 2019나89760 판결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. 10. 30 선고 2018가단56766 판결

전 문

원고,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

담당변호사 오승목

피고,피항소인 1. C

2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구

변론 종결 2020. 4. 8

판결선 고 2020. 5. 6

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. 10. 30. 선고 2018가단56766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

피고들은 원고에게, 주위적으로 9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예비적으로 86,017,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)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의 '2. 수정하는 부분'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수정하는 부분

○ 제1심 판결문의 '원고 B'을 '원고'로, '원고 A'을 '제1심 공동원고 A'로, 원고들을 '원고 B 및 제1심 공동원고 A'로 각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2쪽 아래에서 5줄의 '피고 B'을 '피고 디'로 각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3쪽 10줄의 '원고'를 '제1심 공동원고 A'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4쪽 아래에서 2줄부터 5쪽 9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그러나 다른 한편, 앞서 본 증거들 및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 C는 수사기관에서 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만난 사실이 없고, 제1심 공동원고 A과만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, ②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H도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'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가 제1심 공동원고 A과 동행하지 않았다.

'는 취지로 진술한 점(녹취서 28쪽), ③ 제1심 공동원고 A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였으므로, 향후 민·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.

'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, 피고들은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는데,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었다면 피고들이 제1심 공동원고 A의 각서만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』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하는데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원근판사 강정연판사 김회근